

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권향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50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4.

발 의 자 : 권향엽 · 문진석 · 박지원
서영석 · 이용선 · 최민희
김상욱 · 전진숙 · 이병진
최혁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·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산업위기가 심화된 경우에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하여 지원사업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있으며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필요한 후속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산업 및 경제의 회복탄력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제시됨.

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

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9조 및 제10조).

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지역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에 대하여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지역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
2. 주된 산업의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

제10조제7항 중 “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”를 “시·도지사에게 산업위기지역계획의 후속 계획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, 시·도지사가 수립한 후속 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

있다”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) ① · ② (생략)	제9조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지역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</u> ----- ----- <u>.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<u><후단 신설></u> <u><신 설></u>	1.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지역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
<u><신 설></u>	2. 주된 산업의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
④ ~ ⑥ (생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) ① ~ ⑥ (생략)	제10조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	⑦ ----- -----

료(지정기간이 연장된 이후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지역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<u>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 ⑧ · ⑨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시·도지사에게 산업위기지역계획의 후속 계획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, 시·도지사가 수립한 후속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</u> ⑧ · ⑨ (현행과 같음)
--	---